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7. 12.(목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542, 3543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에서 퇴출 국내 등록 장비 6162대 대상 전수조사 결과 366대 적발 행정조치

- 국내에 등록('17년 12월 기준)된 타워크레인 6,162대를 대상으로 등록 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 말소 조치했다.
-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'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'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, 제작사·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.
  -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,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,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.
  - 한편,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, 등록명판,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,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.

○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, 일부 업체는 등록 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.

○ 이에,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·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중 공포·시행 예정이다.

○ 더불어,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\*을 신설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.

\*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,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허위연식 적발사례(현장확인)



허위연식 명판(2015년)



허위명판 속의 숨겨진 실제명판(2001년)